



과 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과천시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불임과 같이 보내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 1부. 끝.

과 천 시 장



수신자 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조정과장)

지방행정주사 **박종태**

가족행복팀장 **차미경**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전결 2023. 6. 28.

협조자

시행 가족아동과-15253

(2023. 6. 28.)

접수

우 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

/ www.gccity.go.kr

전화번호 02-3677-2258

팩스번호 02-2150-1524

/ mymail@korea.kr

/ 부분공개(5)

법령의 근거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과 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관련 보완자료 제출

1. 과천시 가족아동과-15253(2023.6.28.)호와 관련입니다.
2. 과천시 「다자녀양육 바우처 지원」 추진을 위해 기 제출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서를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보완) 1부. 끝.

과 천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조정과장), 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장형지	가족행복팀장	차미경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경제복지국장	전결 2023. 10. 6.
							김동석

협조자

시행 가족아동과-23033 (2023. 10. 6.) 접수

우 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중앙동) / www.gccity.go.kr

전화번호 02-3677-2258 팩스번호 02-2150-1524 / jaykay00@korea.kr / 비공개(5)

법령의 근거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다자녀양육 바우처 지원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협지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설														
협약요청일/ 시행예정일	협약요청일(2023.06.27.) /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2024.01.01.)														
작성자	경기도 (과천시)	가족아동과	장형지	02-3677-2258	jaykay00@korea.kr										
근거	중앙	<input type="checkbox"/> 법령 <input type="checkbox"/>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조례 <input type="checkbox"/> 훈령 <input type="checkbox"/> 예규 <input type="checkbox"/> 고시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법률 <input type="checkbox"/>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시도 조례/규칙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군구 조례 규칙 <input type="checkbox"/> 지침(방침)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목적 (신설필요성)	만혼화 현상과 함께 출산·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다자녀가정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함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건강 <input type="checkbox"/> 안전 <input type="checkbox"/> 문화 및 여가 <input type="checkbox"/> 법률 및 권익보장 <input type="checkbox"/> 정신적 건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육 및 교육 <input type="checkbox"/> 관계 <input type="checkbox"/> 돌봄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구유형	<input type="checkbox"/> 신혼부부가구 <input type="checkbox"/> 1인가구 <input type="checkbox"/> 조손가구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가구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가구 <input type="checkbox"/> 가정위탁가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구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자녀가구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생애주기	<input type="checkbox"/> 구분없음(전생애)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청년 <input type="checkbox"/> 중장년 <input type="checkbox"/> 노년													
	예산분류 <small>* 다중선택 불가</small>	중앙	<input type="checkbox"/> 일반지방행정(010) <input type="checkbox"/> 공공질서 및 안전(020) <input type="checkbox"/> 통일외교(030) <input type="checkbox"/> 국방(040) <input type="checkbox"/> 교육(050) <input type="checkbox"/> 문화 및 관광(060) <input type="checkbox"/> 환경(070)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080) <input type="checkbox"/> 보건(090) <input type="checkbox"/> 농림수산(100) <input type="checkbox"/>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input type="checkbox"/> 교통 및 물류(120) <input type="checkbox"/> 통신(130) <input type="checkbox"/> 국토 및 지역개발(140)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150)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일반공공행정(010) <input type="checkbox"/> 공공질서 및 안전(020) <input type="checkbox"/> 교육(050) <input type="checkbox"/> 문화 및 관광(060) <input type="checkbox"/> 환경(07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복지(080) <input type="checkbox"/> 보건(090) <input type="checkbox"/> 농림수산(100) <input type="checkbox"/>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input type="checkbox"/> 교통 및 물류(120) <input type="checkbox"/> 국토 및 지역개발(150)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150)													
성과지표	가. 성과지표명: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율(관내 다자녀가정 대비 지원 비율) 나. 성과목표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2024</td> <td style="width: 15%;">2025</td> <td style="width: 15%;">2026</td> <td style="width: 15%;">2027</td> <td style="width: 15%;">2028</td> </tr> <tr> <td>9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r> </table>					2024	2025	2026	2027	2028	90%	100%	100%	100%	100%
2024	2025	2026	2027	2028											
90%	100%	100%	100%	100%											
지원 대상	선정기준	(자격기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득 수급자격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적자격 <input type="checkbox"/> 자체소득재산 기준 <input type="checkbox"/> 기타() -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하는 가정													
	대상규모	<input type="checkbox"/> 가구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2023</td> <td style="width: 15%;">2024</td> <td style="width: 15%;">2025</td> <td style="width: 15%;">2026</td> <td style="width: 15%;">2027</td> </tr> <tr> <td>-</td> <td>5,224</td> <td>5,300</td> <td>5,300</td> <td>5,300</td> </tr> </table>				2023	2024	2025	2026	2027	-	5,224	5,300	5,300	5,300
2023	2024	2025	2026	2027											
-	5,224	5,300	5,300	5,300											

구 분		주요 내용										
지원 내용	지원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지급 <input type="checkbox"/> 현금대여(융자) <input type="checkbox"/> 현물지급 <input type="checkbox"/> 현물대여 <input type="checkbox"/> 감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실물바우처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 <input type="checkbox"/> 시설임소 <input type="checkbox"/> 지역화폐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원주기 * 다중선택 불가	<input type="checkbox"/> 일 <input type="checkbox"/> 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년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input type="checkbox"/> 부정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원수준	둘째아 월 30,000원, 셋째아 월 50,000원, 넷째아 이상 월 100,000원										
전 달 체 계	신청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관할주민센터)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										
	조사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관할주민센터)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정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과천시)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과천시)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후 관리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시도 (기관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군구 (기관명: 과천시)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중앙부처)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민간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요 재원	총규모	총 7,359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024</td> <td>2025</td> <td>2026</td> <td>2027</td> <td>2028</td> </tr> <tr> <td>1,359</td> <td>1,500</td> <td>1,500</td> <td>1,500</td> <td>1,500</td> </tr> </table>	2024	2025	2026	2027	2028	1,359	1,500	1,500	1,500	1,500
	2024	2025	2026	2027	2028							
1,359	1,500	1,500	1,500	1,500								
재원별 규모	<input type="checkbox"/> 국비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시도 (총__백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군구 (총 7,359백만원) <input type="checkbox"/> 기금출자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민간재원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교육청특별 회계 (총__백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타											
지역사회보장 계획포함 여부	<input type="checkbox"/> 포함 (추진전략번호: 세부사업번호: 중점사업: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포함											

2.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 사업추진의 배경 및 당면한 사회적 문제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의 목적 및 성과 등

- 만혼화 현상과 함께 출산·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다자녀가정의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됨.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의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음. 다자녀가정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 출산 의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다자녀가정은 자녀 한 명당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 교육, 의료, 생활비 등 다양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다자녀가정에서는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는 가정 안정성 및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자녀수가 적은 가정에 비해 누려야 할 경제적 지원을 더 적게 받고 있어, 아동 권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양육비 부담은 증가하나 가정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원은 감소하여 양육환경이 악화됨. **자녀수에 따른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가 요구됨.**
- 특히, 양육비용의 부담이 자녀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데 반해, 다자녀가정 육아 지원은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어,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의 확장을 통한 교육비 지원을 강하게 희망하는 경향성을 보임.
-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8세 이상 13세 미만까지의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양육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관련법 및 조례 등) 및 위법소지 등 사전검토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과천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과천시 출산·입양 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위법소지 없음

● 사업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부담스러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가계 경제적 안정을 촉진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인구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② 지역의 특수성

● 제도 신설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 재건축 및 토지개발로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2022년 과천시 사회조사 결과 15세 미만 인구의 증가로 유년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과천시의 유소년 인구(0-14세)는 10,003명(13.6%),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52,984명(72.2%),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0,358명(14.1%)으로 나타남
- ※ 생산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할 총 부양비는 38.4명이며, 2020년 대비 유년부양비가 증가함

※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명, 인구 1백명당 명)

연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총부양비 ¹⁾	노령화 지수 ⁴⁾			
						유년 부양비 ²⁾	노년 부양비 ³⁾		
과천시	2017년	57,527	7,528	42,525	7,474	35.3	17.7	17.6	99.3
	2018년	58,142	7,501	42,879	7,762	35.6	17.5	18.1	103.5
	2019년	58,289	7,377	42,828	8,084	36.1	17.2	18.9	109.6
	2020년	63,231	8,132	46,105	8,994	37.1	17.6	19.5	110.6
	2021년	73,345	10,003	52,984	10,358	38.4	18.9	19.5	103.5
경기도	2017년	12,873,895	1,868,329	9,537,731	1,467,835	35.0	19.6	15.4	78.6
	2018년	13,077,153	1,853,993	9,671,359	1,551,801	35.2	19.2	16.0	83.7
	2019년	13,239,666	1,828,203	9,760,122	1,651,341	35.7	18.7	16.9	90.3
	2020년	13,427,014	1,806,962	9,844,737	1,775,315	36.4	18.4	18.0	98.2
	2021년	13,565,450	1,773,397	9,910,589	1,881,464	36.9	17.9	19.0	106.1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외국인 제외

주 : 1) 유년부양비+노년부양비

2) 유소년인구(0-14세)/생산가능인구(15-64세)*100

3) 고령인구(65세 이상)/생산가능인구(15-64세)*100

4) 고령인구(65세 이상)/유소년인구(0-14세)*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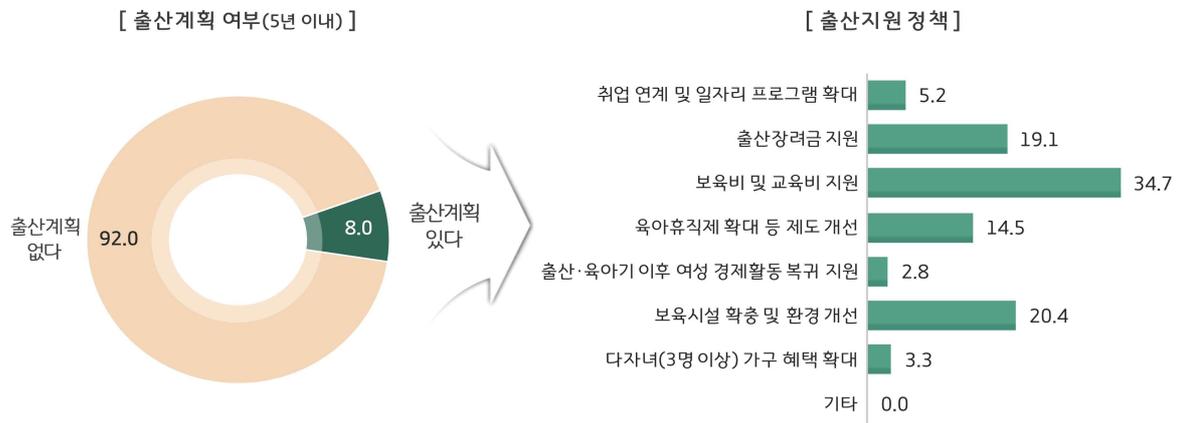
- 가장 필요한 출산 지원 정책으로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가장 선호(2022년 과천시 사회조사)

※ 5년 이내 출산계획이 있다는 가구(8.0%)를 대상으로 출산지원 정책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3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20.4%, '출산장려금 지원' 19.1% 순으로 나타남

※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은 2권역(34.8%), 여자(39.9%), 20~29세(56.9%), 대학원 졸업(44.3%)에서 높고,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은 1권역(21.3%), 남자(21.0%), 20~29세(28.6%), 대학교 졸업(24.2%)에서 높게 나타남

※ 출산계획 및 출산지원 정책

(단위 : %)



- 재건축 및 토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7년을 정점으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과천시 중장기 보육수급계획 수립, 2022. 9. 22.)

- 관련 통계자료
- 0-6세 인구 추계

(단위 : 명)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인구수	5,526	5,304	4,936	5,172	4,862	4,632	4,437

※ 출처 : 과천시 중장기 보육수급계획 수립(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2.9.22.)

-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

(단위 : 건)

시점	자녀수별 가구수						비고
	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이상	소계	
2023	8,621	3,397	4,283	870	71	5,224	*출처: 통계청
2021	7,276	3,034	3,621	591	27	4,239	
2020	6,315	2,465	3,308	508	34	3,850	
2019	5,970	2,342	3,101	493	30	3,624	
2018	6,097	2,303	3,236	516	42	3,794	
2017	6,250	2,300	3,379	530	37	3,946	

※ 출처 :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2023. 5월 기준), 통계청 인구총조사(2017년~2021년, 2022년 자료 없음)

⇒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 필요

3. 기존제도와의 관계

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과천시 제5기('23~'26)지역사회보장계획 내 사회보장 관련 욕구 어려움 및 필요성 분석 결과 아동돌봄부문 핵심과제로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과 '양육비 부담'을 선정

구분	설문 항목	어려움의 정도			필요성			종합	
		경기도 평균	과천시 평균	GAP	경기도 평균	과천시 평균	GAP	평균 합산	욕구 순위
아동 돌봄	양육비 부담	34.9	34.3	-0.6	45.1	37.9	-7.2	72.2	9
	양육지원시설 및 서비스 부족	33.7	31.5	-2.2	44.7	37.2	-7.5	68.7	12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 시간 부족	34.6	38.0	3.4	43.2	42.4	-0.8	80.4	4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 기술 부족	32.7	33.2	0.5	41.3	38.8	-2.5	72.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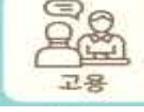
욕구분석에 대한 핵심과제 도출

과천시



장애인돌봄

1. 아동 및 외출의 어려움
2. 신체적·정신적 부담
3.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고용

1.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2.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3.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교육

1. 기초학습 능력의 부족
2. 학업유지의 어려움
3. 평생교육의 어려움



아동돌봄

1.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2. 양육비 부담
3. 양육 관련 정보·기술 부족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다자녀가구 양육비지원 등 출산에 따른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음.
- 기존 '아동수당'이 8세 미만 모든 아동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8세 이상 13세 미만까지의 2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다자녀양육 바우처 지원

※ 지자체 다자녀 양육비 지원 현황

구분	지원대상	지급액	조 례 명
안산시	둘째아 이상 0세~5세	월 5만원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1)
인천계양구	둘째아 이상 0세~5세	월 10만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19.1)
서산시	둘째아 이상 0세~3세	월 10만원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18.7)
여주시	셋째아 이상 신청한 달~5세	월 5만원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20.7)
이천시	셋째아 이상 1~6세	월 5만원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11.6)
평택시	셋째아 이상 0~36개월	월 10만원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21.1)
광주시	셋째아 이상 0~12개월	월 20만원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19.1)
완주군	셋째아 이상 6세~9세	월 10만원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20.4)
해남군	셋째아 이상 25개월~18세	월 5만원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21.9)

③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사업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자녀가 많을수록 총양육비 부담은 증가하나 가정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원은 감소하여 양육환경이 악화됨
- 자녀수에 따른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다수의 시민이 수혜를 받도록 추진
-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는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을 위해 용처를 정해 지원되며, 이를 통한 양육부담 경감 효과 발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으로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과천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구분	지원기간	23년 지원금액	24년 지원금액(안)	지원대상 / 종류	비고
출산장려금	출생시(1회)	100~500만원	좌동	첫째 100, 둘째 150, 셋째 300, 넷째 이상 500	시비
임신출산 축하용품	출생시(1회)	20만원		2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임신 축하금	1회	20만원		지역화폐(카드형)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회	10만원		지역화폐(카드형)	
첫만남이용권	출생시(1회)	200만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카드)	국비
부모급여	0~11개월	월 70만원	월 100만원	자가보육시 / 현금	
	12~23개월	월 35만원	월 50만원	자가보육시 / 현금	
양육수당	24~86개월	월 10만원	좌동	현금	
아동수당	0~95개월	월 10만원		현금	

④ 다자녀양육 바우처 지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포함 여부

- 관련 근거*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은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은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에 해당됨.

(단,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은 수급(권)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에 대해 수급(권)자가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다자녀양육 바우처는 월 30만원 이내에서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바우처로 지급할 예정이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과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별 수급자 중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이 있는 가구는 총 17가구(2023년 7월말 기준)로 다자녀양육 바우처 지원시 가구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의 지급이 예상되며, 해당 금액은 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됨(참고자료 별첨)

- * 관련근거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소득의 범위)
 ③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02~103쪽)

4.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신설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 수준 및 지급방식 선정의 근거 및 적절성 검토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하여 바우처 카드 지원

자녀 수	둘째	셋째	넷째 이상
8세 이상 ~ 13세 미만 아동	월 3만원	월 5만원	월 10만원

* 단, 바우처의 사용처는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분야로 제한하여 운영[예: 예체능 분야 학원(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서점, 문구점,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볼링장, 빙상장, 과학관, 미술관]

- 지원인원 : 3,134명

(단위 : 명)

출생순위	연령별, 자녀수별 가구수					
	계	8세	9세	10세	11세	12세
2	2,359	489	475	474	476	445
3	700	145	141	117	152	145
4	61	9	16	10	14	12
5	7	0	2	2	2	1
6	7	1	1	2	2	1
계	3,134	644	635	605	646	604

* 출처 :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2023. 5월 기준)

- 소요예산 : 1,359,240천원

(단위 : 천원)

지원기간	대상아동	월 지급액	월간 대상자수	1인당 지원액 (5년간)	월간 소요액	연간 소요예산	비고
8세 이상 ~ 13세 미만 (5년간)	둘째	3만원	2,359	1,800	70,770	849,240	
	셋째	5만원	700	3,000	35,000	420,000	
	넷째 이상	10만원	75	6,000	7,500	90,000	
계			3,134		113,270	1,359,240	

- 연도별 비용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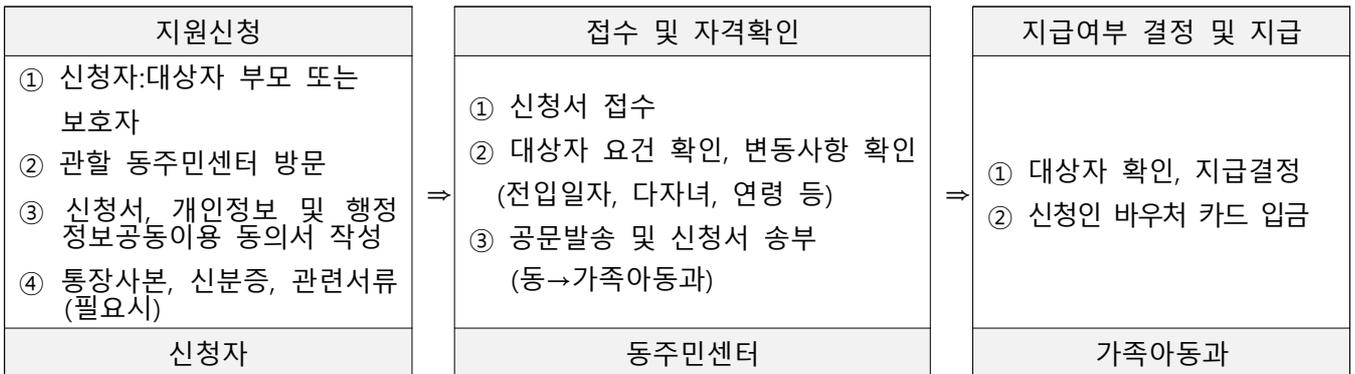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다자녀양육 바우처	1,359	1,500	1,500	1,500	1,500	7,359

5.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전달체계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 : 부모 또는 보호자
- 신청시기 : 최초 1회 신청(소급지급 불가, 신청자격 신규 취득자 수시 신청)
- 신청장소 : 신청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관련서류를 통한 자격확인
- 다자녀 가정 및 대상자 연령조건 해당여부

- 대상자 제출(동→가족아동과)

- 지급대상자의 요건 재확인(주소, 연령)
- 신규 대상자 목록(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

- 지급결정 : 신청 다음 달 20일 한(월 1회)

- 지급방법
 - 지원주기 : 월 1회(최대 5년)
 - 8세가 된 달부터 13세가 되는 전달까지
 - 지급은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부터 산정하며, 소급지급 불가
 - 바우처 지급 : 대상자 명단 정리 후 바우처 관리 시스템 입력
- 부정수급 및 환수
 - 부정수급 확인 : 주소 이전 미신고 및 행정착오 등 부정수급 확인
 - 처분사전통지(민원인 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
 - 환수결정 : 지급 부합사유, 환수대상, 부정수급액 및 납부방법 결정
 - 납부통지 및 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부여하여 납부 하도록 통지 및 독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필요한 정보 항목 : 주소, 성명, 출생 순위별 자녀 수, 생년월일, 8세 이상~13세 미만 둘째 이상 자녀 현황
 - 필요한 기능 : 대상자 결정 후 전출입 등 변동사항 확인(자녀 나이, 주소변동사항 등), 개인별 지급액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②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시 자체사업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없으며,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부담은 크지 않음.
- 본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단위 : 억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일반회계 기준)			
		전체예산 (a)	사회복지 예산 (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 사업 중 자체사업*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small>*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small>
45.34%	74.13%	3,777	1,072	28.3%	24.9%

※ 출처 : 2023년 지방재정공시

6.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과천시 제5기('23~'26)지역사회보장계획 내 사회보장 관련 욕구 어려움 및 필요성 분석 결과 아동돌봄부문 핵심과제로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과 '양육비 부담'을 선정
 - 과천시 복지 수요에 대한 주민 욕구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아동돌봄과 관련해서는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났으며 향후 지식정보타운 및 다양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주거시설의 신축 및 확장으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그 안에는 돌봄이 필요한 계층의 인구도 다수 유입될 것으로 예측이 되므로 사회보장적 접근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향후 과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 예정

7. 사후 성과관리 계획

성과목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과천				
지표명	다자녀양육 바우처 지원율				
지표정의	$(\text{다자녀양육 바우처 지원가정} / \text{다자녀가정 수}) \times 100$				
연도별 목표	2024	2025	2026	2027	2028
	90%	100%	100%	100%	100%
목표설정 근거	관내 다자녀가정 전수 지원				
측정방법	주민등록 통계, 지원 가구 수 확인				
측정주기	연 1회				

8. 참고자료

[과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과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적극적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I 추진 배경

-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로 다자녀 지원 기준 개선 등을 추진
- 이를 통해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추진,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고 있음
- 재건축 및 토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7년을 정점으로 영유아¹⁾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

II 과천시 현황

○ 자녀수별 가구 현황

(2023. 5월 기준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총 세대수	자녀수별 가구수					비고
	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이상	
29,102	8,621	3,397	4,283	870	71	전체의 60%

* 집계대상: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자녀수에는 함께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자녀도 포함

< 과천시 인구 추이 >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생아 수(명)	281	282	393	497	600
다자녀가구수	558	523	542	618	미발표
합계출산율	0.796	0.780	0.993	1.057	1.20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2년), 과천시 열린민원과('22년 11월)

* 다자녀가구: 만18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1) 과천시 중장기 보육수급계획 수립(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2.9.22. 발행) 책자 참고

○ **과천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2010. 4월부터 시행)**

- (지원대상)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정
- (사업내용) 다자녀가정에 관내 약정된 업체의 할인 혜택을 제공
※ 서울랜드, 음식점, 목욕업소, 공용주차장 등 할인

○ **부서별 지원사업 현황**

소관부서	구분	대상	지원내용	관련 근거
기획홍보담당관	이용료	3자녀	시민회관 주차시설 50% 감면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수강료	3자녀	시민회관 문화체육프로그램 20% 감면	
자치행정과	수강료	3자녀	문화교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0% 감면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문화체육과	이용료	3자녀	추사박물관 관람료 면제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10조
회계과	이용료	2자녀	시청 및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이용료	3자녀	전액 감면	
가족아동과	이용료	3자녀	아이러브맘카페 연회비(1만원) 50% 감면	과천시 보육 조례 제11조
	이용료	3자녀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50% 감면	
	이용료	3자녀	시간제보육 이용료 50% 감면	
	이용료	3자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제10조
교육청소년과	수강료	3자녀	수강료의 50% 감면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제22조
교통과	이용료	2자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과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
	이용료	3자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Ⅲ 추진방향

□ **다자녀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 예산 등의 문제로 즉각적인 완화가 어려울 경우 차등지원 등의 방법으로 단기적으로 완화 후 장기적으로 추가 완화
- 자녀수에 따른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4자녀 이상은 소득기준을 완화 또는 철폐, 신규사업 설계 시 지원대상을 제한할 경우 조건에 자녀수 포함

□ **양육비 경감을 위한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 강화**

- 지원 자녀수 확대 : 자녀가 많을수록 총양육비 부담은 증가하나 가정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원은 감소하여 양육환경 악화, 자녀수에 따른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지원

IV

세부 추진계획

1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 ◆ 다자녀 지원기준 확대(3자녀 → 2자녀) 및 감면 서비스 확대
- ◆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 다자녀 지원 관련 규정 신설, 부서별 다자녀 감면기준 조례 일괄 개정

- (현황)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의 기준이 조례마다 달라 시민 혼선 및 시정의 신뢰성 저하,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 (시행시기) 2024. 1월부터
- (지원기준)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대상가구) 5,224가구
- (감면내용) 수강료, 입장료, 이용료, 주차요금, 수도요금
- 지원 확대 운영계획

구분	시설(내용)	기존 (3자녀 이상)	변경	관련 부서
수강료	시민회관 문화·체육프로그램	20% 감면	2자녀 이상 20% 감면	기획홍보담당관
	문화교육센터	50% 감면	2자녀 이상 50% 감면	자치행정과
	여성비전센터	무료	2자녀 이상 50%감면	가족아동과
	평생학습센터	50% 감면	2자녀 이상 50% 감면	교육청소년과
입장료	추사박물관	무료	2자녀 이상 무료	문화체육과
이용료	아이러브맘카페	50% 감면	2자녀 이상 50% 감면	가족아동과
	장난감 도서관	50% 감면	2자녀 이상 50% 감면	
	시간제 보육	50% 감면	2자녀 이상 50% 감면	
	청소년수련관	없음	2자녀 이상 50% 감면	교육청소년과
주차요금	시민회관	50% 감면	2자녀 이상 50% 감면	기획홍보담당관
	시청 부설주차장	2자녀 50% 감면 3자녀 이상 무료	2자녀 50% 감면 3자녀 이상 무료	회계과
	공영주차장	2자녀 20% 감면 3자녀 이상 50% 감면	2자녀 이상 50% 감면	교통과
수도요금	수도요금	없음	3자녀 이상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맑은물사업소

○ 관련 조례 개정

<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 다자녀가정 지원 규정(다자녀가정 양육수당) 신설

< 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위한 규정이 담긴 조례 정비 >

- 현행 조례의 감면기준보다 완화 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일괄 정비

※ 정비 조례 목록

- ①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②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③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 ④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 ⑤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⑥ 과천시 보육 조례
- ⑦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 ⑧ 과천시 주차장 조례
- ⑨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2

경기톡D 카드를 이용한 ‘다자녀가정’ 확인 서비스 도입

◆ 일반카드(과천 다자녀사랑 카드) ⇒ 앱카드(경기톡D 카드)로 변경

- (추진배경) ‘경기톡D’앱은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신원정보를 조회하는 ‘도민카드’ 서비스를 제공, 현재 83개 공공시설에서 이용객 신원확인 용으로 쉽게 사용 가능

※ 신원정보 : 이름, 생년월일, 나이, 거주시, 자녀수(미성년자기준), 카드 발급일시

- (도입계획) 공공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녀수 등 신원확인과 가족관계 확인을 쉽게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톡D 카드를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 후 2024년부터 시군협력 사업으로 추진

※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와 협의 중(2024년 시행), 2023년 안산, 화성 추진 예정

- **(현황)** 재건축 및 토지개발로 인구 유입 증가되고 있으며 '22년 과천시 사회조사 결과 15세 미만 인구의 증가로 유년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가장 필요한 출산 지원 정책으로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가장 선호
- **(지원시책)** '24년에 지식정보타운 입주에 따라 영유아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27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사업 추진(*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

- ◆ 자녀수가 많을수록 총양육비 부담은 증가하나 가정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원은 감소하여 양육환경 악화, 자녀수에 따른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지원 필요
 - * 지원기준 : 8세 이상 ~ 13세 미만 아동²⁾
- ◆ 매월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하는 가정
- 지원내용 :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하여 지역화폐로 지원

자녀 수	둘째	셋째	넷째 이상
8세 이상 ~ 13세 미만 아동	월 3만원	월 5만원	월 10만원

- 지원인원 : 다자녀 3,134명
- 사업예산 : 1,359,240천원(시비)

2)아동수당 : 2019년부터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 지원사업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2023. 5월 기준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8세 이상 ~ 13세 미만 다자녀 현황			
계	둘째	셋째	넷째 이상
3,134	2,359	700	75

○ 소요예산 : 1,359,240천원

(단위 : 천원)

지원기간	대상아동	월 지급액	월간 대상자수	1인당 지원액 (5년간)	월간 소요액	연간 소요예산	비고
8세 이상 ~ 13세 미만 (5년간)	둘째	3만원	2,359	1,800	70,770	849,240	
	셋째	5만원	700	3,000	35,000	420,000	
	넷째 이상	10만원	75	6,000	7,500	90,000	

V 행정사항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 : 2023. 6월
- 다자녀 관련 조례 일괄 개정 : 가족아동과
- 2024년 다자녀가정 지원 예산확보 : 기획홍보담당관, 관련 부서
- 감면내용 등 대 시민 홍보 : 2023. 12월
- 신청접수 및 사업추진 : 2024. 1월부터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지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 과천시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신설에 대한 관련부서(복지정책과) 의견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



과 천 시



수신 가족아동과장
(경유)

제목 과천시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신설에 대한 의견 제출

1. 가족가동과-21236(2023.9.12.)호와 관련입니다.
2.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지원(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1. 과천시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신설에 대한 부서 의견 1부.
2. 근거자료 1부. 끝.

복 지 정 책 **과 장** 직

주무관	김민정	복지조사팀장	전경애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2023. 9. 13.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236	(2023. 9. 13.)	접수	가족아동과-21343	(2023. 9. 13.)	
우	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			/ www.gccity.go.kr	
전화번호	02-36772852	팩스번호	02-2150-1505	/ kmjeong19@korea.kr	/ 대국민 공개	

법령의 근거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과천시 출산·임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부서 의견조회

해 당 조례안	<p>제12조(다자녀가정 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2. 시가 개별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주차료, 수수료 등의 감면 3.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족아동과 문의사항	<p>본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지급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p>
복지정책과 답변사항	<p>위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4년도에 신설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8세에서 13세 미만의 다자녀의 가정에 양육 목적에 필요한 비용의 성질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해됩니다. 2.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은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에 해당되며, 수급(권)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월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에 대해 수급(권)자가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다자녀가정 양육수당이 월30만원 범위에서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바우처로 지급할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자료 ※관련자침 등 발점 요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소득의 범위) ③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02쪽,103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보건복지부(차량지원과-차량지원), 044-202-3072, 3073

제1장 총칙 <개정 2012. 2. 1.>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 1. 근로소득
- 2. 사업소득
- 3. 재산소득
-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 2. 금융재산
-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부 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로 한다.

㉕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2.] [대통령령 제32711호, 2022. 6.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1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자활지원), 044-202-3073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4. 6. 30., 2015. 4. 20., 2015. 12. 31., 2016. 6. 21., 2018. 9. 18., 2019. 10. 15., 2020. 12. 22., 2021. 6. 29.>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호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1.>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③ 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4. 20.>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9. 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5. 4. 20.>]

부 칙 <대통령령 제32711호, 2022. 6. 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외국 체류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급자이거나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나. 실제소득 [시행령 제5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수급(권)자의 소득산정 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입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단, 부양의무자의 입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차감

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 (3)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5)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를 들어, 교육 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납입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제 3
편

조사

-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8)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9)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사업안내'에 따른 부모급여
- (10)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다)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1)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 저소득주민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 (2)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 예를 들어,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인 중고생 교복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인 동절기 난방비 등

3)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가)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

- 과천시 수급자 중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이 있는 가구 현황

(2023. 7. 31.기준)

연번	동명	보장구분	가구주 성명	아동 성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1	중앙동	기초생계	안*아	조*영	2010.10.19.	2
2	중앙동	기초생계	안*아	조*량	2014.5.2.	3
3	중앙동	기초주거	최*훈	최*아	2014.7.22.	2
4	원문동	기초교육	강*욱	이*윤	2010.5.10.	2
5	별양동	기초교육	김*진	박*유	2011.8.15.	2
6	별양동	기초생계	이*선	구*준	2011.2.8.	2
7	별양동	기초주거	정*호	정*량	2012.2.28.	3
8	별양동	기초생계	조*형	조*세	2013.2.5.	2
9	별양동	기초생계	정*늘	김*용	2014.3.24.	2
10	부림동	기초생계	정*실	전*민	2013.7.8.	2
11	과천동	기초주거	김*희	김*정	2010.10.15.	2
12	과천동	기초주거	신*득	신*아	2015.6.25.	2
13	과천동	기초교육	한*택	한*진	2013.12.10.	3
14	문원동	기초생계	윤*종	윤*온	2013.10.29.	4
15	문원동	기초주거	제*정	전*빛	2011.1.5.	2
16	문원동	기초주거	한*복	한*윤	2014.9.27.	2
17	문원동	기초교육	이*자	이*량	2012.7.23.	2

[관련통계 자료]

－ 인구증감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05
인구수	58,289	63,231	73,345	78,137	79,397
증감수		4,942	10,114	4,792	1,260

※ 출처 : 통계청(주민등록인구현황)

－ 출생아수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출생아수	282	393	497	600
사망자수	244	245	286	
증감수	38	148	211	

※ 출처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전 국	0.918	0.837	0.808	0.780
경 기	0.943	0.878	0.853	0.840
과 천	0.780	0.993	1.057	1.020

※ 출처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 과천시 0-6세 인구 추계 (단위 : 명)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22년	4,267	542	560	543	554	616	684	768
2023년	4,541	551	644	636	610	633	703	764
2024년	5,526	629	775	819	797	779	847	880
2025년	5,304	507	665	797	847	818	804	866
2026년	4,936	522	502	659	793	843	816	801
2027년	5,172	636	624	552	717	832	910	901
2028년	4,862	591	636	624	552	717	832	910
2029년	4,635	634	602	643	630	560	725	841
2030년	4,437	643	634	602	643	630	560	725
2031년	4,376	664	643	634	602	643	630	560

※ 출처 : 과천시 중장기 보급수급계획(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2.9.22.)

－ 주민등록 인구 수(8세~12세) (단위 : 명)

연령별	2023.05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계	4,216	4,033	3,564	2,973	2,749	2,804	2,834
8세	877	853	711	626	516	503	519
9세	862	786	752	586	511	538	587
10세	802	844	710	548	551	595	572
11세	862	807	685	594	590	588	571
12세	813	743	706	619	581	580	585

※ 출처 : 통계청(주민등록인구현황)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3조(일자리·주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과 주거·임신·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경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항번호 추가 2021.9.28.>

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개정 2021.9.28.>
2.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3.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입양특례법」 제3조에 따라 출산·입양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녀의 출산·입양 및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이란 출산·입양장려금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출산·입양을 장려하고 출산·입양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를 말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6. “다자녀수당”이란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출산장려금 및 입양장려금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장려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며,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 ② 신청인이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부턴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기준)

- ① 시장은 출산으로 인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1. 첫째자녀 100만원
 2. 둘째자녀 150만원
 3. 셋째자녀 3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4. 넷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 ② 영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③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여부 등 확인 후 둘째자녀 이상이면 지급한다.
- ④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입양장려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입양자녀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자녀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입양장려금을 지급한다.

1. 자녀수가 1명 100만원
 2. 자녀수가 2명 150만원
 3. 자녀수가 3명 3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4. 자녀수가 4명 이상 5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 ② 그 밖의 지원기준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규정 별지 제1호서식)
2. 제5조제3항의 경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입양아의 경우 입양사실확인서 1부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자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다자녀가정 지원

제9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10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자녀수당 지급
2. 시가 개별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주차료, 수수료 등의 감면
3.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우대카드는 시 다자녀사랑카드 제작방법에 따른다.

제11조(다자녀수당 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다자녀수당의 지급금액, 지원신청, 절차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지원중단 및 환수 등

제12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장려금 분할 지급대상자(셋째 자녀 이상)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영아 및 입양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지원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시 관내로 재 전입한 경우(다만, 전출 후 30일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에는 계속 거주로 인정한다)

4. 입양아가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9조의 지원대상 가정의 전출 및 구성원 변동 등 대상자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13조(환수 등) ① 시장은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 또는 다자녀수당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과천시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과천시 가족아동과-15253(2023.6.28)호, 23033(2023.10.6)호로 협의요청하신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협의완료'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협의결과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과천시장(가족아동과장), 과천시의회의장, 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가 급)	김정은	행정사무관 조강훈	사회보장조정 과장 신은경	사회보장위원 전결 2023. 10. 17. 회사무국장 이상원
--------------	-----	--------------	---------------------	--------------------------------------

협조자

시행	사회보장조정과-6918	(2023. 10. 17.)	접수	가족아동과-23825	(2023. 10. 17.)
----	--------------	-----------------	----	-------------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어진동) KTnG 세종타워B 이스트동 / http://www.mohw.go.kr
10층

전화번호 044-202-3735 팩스번호 044-202-1976 / lydiasilver@korea.kr / 부분공개

[신설]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경기 과천시]

검토결과	협의완료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완료'- 다만,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용처 범위 내 사용·관리하도록 가맹점 관리·감독 및 장기간 지급(8세-13세 미만, 최대 5년)에 따른 대상자 이탈 확인 등 부정수급 방지 필요- 광역 지자체(교육청 포함) 등에서 다자녀가정 자녀 대상 각종 교육비 지원 사업 등이 기 시행 중일 경우 우선 활용 후 지원 필요